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범위 규정 등〉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93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범위 규정	3
2.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	6
3.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한 대출금 계속 상환 허용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민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0.
3. 회부연월일 : 2024. 8.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해 금융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 하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촉진, 재기 지원을 위하여 지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에 그 정책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음.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개편에 따라 상환연장제도의 대상이 소상공

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 전체인 약 63.5만명으로 확대되고, 해당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차주 상황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원금 상환의 부담이 62.5% 내외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임.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곤 있으나 그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진 않음.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에 정책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부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상환 연장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이 안정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및 경영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 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범위 규정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범위를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그리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안 제22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은 5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¹⁾할 수 있는데, 그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관련 고시와 내규에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상환기간 연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 ① 공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라 한다)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재산이 대출금 회수에 따르는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2조(상환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간 내에서 용자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1. 전쟁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등)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진공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요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규)

제78조(상환기간 연장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재산이 대출금 회수에 따르는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 상환기일을 연기함으로써 상환회차별 상환액을 감소시키고, 상환 유예는 대출원금 거치기간을 늘림으로써 원금 상환시기를 늦추게 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2.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개정안은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의 범위를 5년 이내로 명시하려는 것인바,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재량에 일정한 한계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자금 융자사업이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소상공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²⁾

다만, 상환기간 연장의 한도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대출금 상환의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채무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한 탄력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점과, 최대 5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 2건³⁾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본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상환기간 연장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는 입장임.

2) 정부는 2024년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였음.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22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533호)

2.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 소상공인에게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u><신설></u>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 (현행과 같음) <u>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한 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u>

개정안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 소상공인에게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대출금의 상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후 경영개선 컨설팅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애로 극복 및 재기 지원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임.

3.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한 대출금 계속 상환 허용

개정안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u><신설></u>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u>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않은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u>

현행법에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등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관련 고시 및 내규에서는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대출금 일시상환 의무와 일시상환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6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소진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u>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기일 전이라도 채권회수절차를 취할 수 있다.</u> 1. 법원에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2. 소진공에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소진공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은 대출금이자 등을 상환하여야 할 때부터 지체일수가 3개월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와 이에 따른 일시 전액 상환 요구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기일 전 채권회수절차는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규) 제100조(기한의 이익 상실 관리) ① <u>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즉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u>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당해 채무에 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다. 1. 일시상환대출인 경우 대출금이자 등을 상환하여야 할 때부터 지체일수가 60일에 이른 때 2. 분할상환대출인 경우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때부터 지체횟수가 3회 이상 이른 때 3. ~ 7. (생략) 8. <u>폐업, 조업중단, 대표자 도피 등의 사유로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단, 폐업 후 제1호와 제2호의 사유 전까지는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와 이에 따른 일시 전액 상환 요구를 유보할 수 있다.)</u> 9. • 10. (생략)
--

개정안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4)에도 상환이 끝나지 않은 대출금에 대하여 전액을 일시상환하게

4)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로 폐업 외에 중소기업으로의 성장도 있음.

하지 않고,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소상공인이 대출금 일시상환의 부담 없이 적시에 폐업하고 재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금 일시상환의 부담 때문에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게 하는 유인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 시 일시상환 유예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⁵⁾,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

5) 정부는 2024년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소상공인이 폐업 시에도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